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23

발의연월일: 2022. 12. 14.

발 의 자:김미애・이채익・한무경

정운천 • 윤상현 • 김상훈

황보승희 · 김형동 · 양금희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 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법원은 수십 차례의 전화 시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수신하지 않았고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추후 확인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불안·공포를 느낄 수 있어 이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할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도달"을 "도달(물건등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	1
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	
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	
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	
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	
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	
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u>도달</u> 하게	<u>도달(물건등</u>
하는 행위	의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
	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도
	달한 것으로 본다)

라.・마. (생 략)라.・마. (현행과 같음)2. ~ 4. (생 략)2. ~ 4. (현행과 같음)